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실시 근거 마련〉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65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8
☐ 참고법률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일영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5.
3. 회부연월일 : 2024.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기관 내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임.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교육기관 역시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우수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우수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생략)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장-----.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하 “각급학교등”이라 한다)의 장-----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

② 각급학교등의-----

-----.

③ -----
-----각급학
교등의-----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등의-----

-----.

-----각급학교등의-----
-----.

②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u>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의 장-----.</u>
③ <u>각급학교의</u>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u>각급학교등의</u> ----- ----- ----- -----.

현행 「평생교육법」 제2조1)에서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평생교육”으로 정의하는 한편,

“평생교육기관”이 될 수 있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①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1)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평생교육법」 제26조²⁾, 제29조³⁾ 및 제30조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고,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 ·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개정안은 「평생교육법」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
- 2)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 · 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 ·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 · 도서관 · 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4) 「**평생교육법**」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 ·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 외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
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이라 함)에 따른
외국교육기관⁵⁾도 포함하여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외국교육기관에서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외국교육기관의 우수한 인프라를 국내에 적극
활용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다 넓게 보
장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률상 교육부장관(교육감)의 설립 승인을 받아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평생교육 인프라 확대 및 외국교육기
관 목적인 외국인의 교육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임.

한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
협력법”이라 함)제2조6)를 살펴보면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외국교육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기관법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이 포함되어 외국교육기관에서도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동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평생교육은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이념으로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이 허용되어 운영중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우수한 인프라를 국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을 허용하는 개정안 내용에 찬성하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7

-
-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 5. <생략>
6. “산학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7. ~ 9. <생략>

[참고자료]

□ 외국교육기관 현황(2023년 9월 기준)

학교급	외국교육기관		현황	지역
초·중등 (초·중·고)	대구국제 학교		- 개설과정 : 유, 초, 중, 고 - 본교 : 미국 Lee Academy	대구
	채드윅 송도국제 학교		- 개설과정 : 유, 초, 중, 고 - 본교 : 미국 Chadwick School	인천 (송도)
	칼빈매니토바 국제 학교		- 개설과정 : 유, 초, 중, 고 - 본교 : 캐나다 Calvin Christian School	
고등 (대학)	한국 뉴욕주립 대학교	SBU (스토니 브룩대)	- 개설학과 : (학사) 컴퓨터과학, 기술경영, 기계공학, 응용수학통계학, 경영학, 전자정보공학 (석사) 컴퓨터과학, 기술경영, 기계공학, 응용수학통계학 - 본교 :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인천 (송도 글로벌 캠퍼스)
		FIT (패션 기술대)	- 개설학과 : 패션디자인학과, 패션경영학과 - 본교 : 미국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고등 (대학)	한국조지메이슨 대학교		- 개설학과 : (학사) 경영학, 경제학, 국제학, 분쟁분석 해결학, 데이터과학, 컴퓨터게임 디자인학 (석사) 데이터과학 - 본교 : 미국 George Mason University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 개설학과 : 식품공학, 환경공학, 분자생명공학 - 본교 : 벨기에 Ghent University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 개설학과 : (학사) 게임학과, 심리학, 신문방송학, 영화영상학, 정보시스템학, 회계학, 도시계획학, 전기컴퓨터공학 (석사) 공중보건학 - 본교 : 미국 University of Utah	

자료: 교육부

[참고법률]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외국교육기관법)

제2조(정의)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제1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추천권자

- 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
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 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설립승인 사항 중 명칭·설립목적·교사(校舍)·교지(校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절차 그 밖에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산학협력법)

제2조(정의)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 나. (생략)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산학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